

기존주택·신혼부부 전세임대,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

- ① 대상 가구소득이 사업별 소득기준 이하이며 재산기준(총자산 1억 7,800만 원, 자동차 2,545만 원) 이하인 무주택자

구분	지원대상	소득 기준
기존주택 전세임대	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 무주택자 등	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% (4인 기준 292만 3,000원) 이하
신혼부부 전세임대	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	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% (4인 기준 292만 3,000원) 이하
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	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 등	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 (4인 기준 584만 6,000원)이하

- 재산기준 : 총자산 1억 7,800만 원, 자동차 2,545만 원 이하

- ②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(전용면적 85㎡ 이하)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

구분	지원내용	
기존주택·신혼부부 전세임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주택 전세임대 : 수도권 최대 9,000만 원, 광역시 최대 7,000만 원, 그 외 지역 최대 6,000만 원 지원 • 신혼부부 전세임대 : 수도권 최대 1억 2,000만 원, 광역시 최대 9,500만 원, 그 외 지역 최대 8,500만 원 지원 -임대보증금 : 전세금의 5% 수준 -월임대료 :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%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-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지원 예시</td> <td>수도권에서 전세금 8,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 원, 월임대료 13만 5,000원 수준</td> </tr> </table>	지원 예시
지원 예시	수도권에서 전세금 8,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 원, 월임대료 13만 5,000원 수준	
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	무상 임대 (단, 20세 이후에는 연 2%의 이자 부담, 최장 6년 연장 가능)	